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·조정 대상을 일부 정비하고, 학교 운영 관련 주요 분야에 관한 사항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- 나. 부설연구기관의 규모와 역할에 따라 설치 근거를 달리 정함으로써, 연구기관별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시대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·조정 대상 중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3조제1항제4호)
- 나.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보고 대상을 신설함(안 제3조제2항)
- 다. 부설연구원과 부설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각각 규칙과 학칙에 두도록 분리하여 규정하고, 부설연구원과 부설연구소를 ‘부설 연구기관’으로 통칭함(안 제7조제2항, 제3항, 제4항)
- 라. 누락된 단어 추가 등 문구 정비(안 제7조제1항, 안 제8조제2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등교육법」,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(2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첨

(3) 입법예고 (2022. 6. 9.~2022. 6. 29.) 결과: 별첨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은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중요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

제7조의 제목 “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)”를 “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설기관”을 “부속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학문연구”를 “학문 및 시정연구”로,

“부설연구소는”을 “부설연구원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 규정된 부설연구원을 제외한 대학교의 학문연구를 위한 부설연구소는 학칙으로 정한다.

제7조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부설연구소의”를 “부설연구기관의”로, “부설연구소에”를 “부설연구기관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대학”을 “대학 및 대학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학문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부설연구소는 규칙으로 둘 수 있다.

<신 설>

③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맡기고,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8조(감독 및 승인) ① (생략)

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
2. 3. (생략)

② 학문 및 시정연구----- 부설연구원은 -----.

③ 제2항에 규정된 부설연구원을 제외한 대학교의 학문연구를 위한 부설연구소는 학칙으로 정한다.

④ ----- 부설연구기관의

-- 부설연구기관에 -----

-----.

제8조(감독 및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.

1. 대학 및 대학원-----
2. 3.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, 부설연구기관(부설연구원, 부설연구소)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이 없음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 구성하(02-2133-7764)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<p>서울시립대학교</p>	<p>○ 제3조(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) 제1항에 심의·조정 대상으로 추가된 제3호~제7호 삭제 요구</p> <p>– 제3호~제7호는 법률에 따라 재정위원회 등 교내 자체기구가 심의·의결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·조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함</p> <p>○ 제7조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) 제2항에 부설연구원의 목적을 “시정 지원 연구 및 정책협력과 학문연구” 로 규정한 내용 삭제 요구</p> <p>– 시립대의 존립 목적이 서울시 정책 및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연구만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市 정책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우려 존재</p> <p>○ 제7조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) 제5항에 총장이 매년 부설연구기관을 평가하고 정비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삭제 요구</p> <p>– 대학의 자율성 및 부설연구기관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학칙 등</p>	<p>○ 일부반영</p> <p>–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조정 대상과 보고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</p> <p>< 심의·조정 대상 ></p> <p>▶ 대학교의 중·장기 발전방향</p> <p>▶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</p> <p>▶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</p> <p>▶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</p> <p>< 보고 대상 ></p> <p>▶ 예산 및 결산</p> <p>▶ 중요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</p> <p>▶ 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</p> <p>▶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</p> <p>○ 일부반영</p> <p>– “시정 지원 연구 및 정책협력과 학문연구” 를 “학문 및 시정 연구” 로 수정</p> <p>○ 반영</p> <p>– 규정 삭제</p>

	<p>학내 규정으로 정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함</p>	
<p>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</p>	<p>○ 제3조(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) 제1항 제7호와 제7조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) 제5항 삭제 요구</p> <p>– 헌법 제31조 제4항(대학의 자율성) 및 제22조 제1항(학문의 자유)에 위배</p>	<p>상동</p>
<p>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</p>	<p>○ 일부개정조례안 모든 항목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</p> <p>– 운영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받아야 하는 안건을 추가하고, 총장의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함</p>	<p>상동</p>
<p>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</p>	<p>○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·조정 대상 확대(제3조 제1항 제3호~제7호)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발생 등이 우려되며, 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입법 진행 요청</p>	<p>상동</p>